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21호
2. 제 출 자 : 김생환 의원
3. 제출일자 : 2017. 11. 6.
4. 회부일자 : 2017. 11. 7.

II . 제안이유

- 정규학교 과정에서 벗어나 소외받고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강의실 면적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 학원의 시설규모 중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규모를 변경함(안 별표3)

IV .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2. 예산조치 :

-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3. 기 타 :

- 입법예고(2017. 11. 10. ~ 11. 17.)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6일 김생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21호로 제출되어 2017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학원의 강의실 면적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학원 설립 확대와 검정고시 준비생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행 검정고시 제도는 정규학교 과정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경제 사정 등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취약계층 등에게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 학력을 인정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 2017년 12월 현재 서울시 관내 검정고시 지원자 수는¹⁾ 초등학교 졸업 학력 지원자 917명, 중학교 졸업 학력 지원자 2,514명, 고등학교 졸업 학력 지원자 8,606명 등 총 12,03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검정고시 학원은 총 2곳이 신규로 생겼고 현재까지 20곳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내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매년 2600~2800개원이 신규로 설립되고²⁾ 총 10,870개가 존재하여 학원 설립과 개수에서도 큰 차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정고시학원의 경우 중구·종로구·영등포구 등 8개 지역에

1)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자료제공(2017.12.4.).

2)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원 및 교습소의 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2,813개원, 2015년 2,819개원, 2016년 2,696개원 등 많은 수의 학원과 교습소가 매년 개원하고 있는 상황임.

밀집되어 있어 지역별로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일반입시 및 보습학원에 비해 지역적으로 편중된 형태를 띠고 있어 학생들의 학원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1】 서울시 관내 검정고시학원 현황

(2017.11.30.기준)

연번	소속청	학원명	위치	등록일
1	동부	수도학원	동대문구	2006.06.23
2	서부	검스터디원격학원	마포구	2015.07.06
3	서부	케이비에스에듀원격학원	마포구	2015.06.12
4	남부	서울학원	영등포구	2014.11.24
5	남부	지금교육검마스터원격학원	금천구	2017.07.18
6	남부	한양학원	영등포구	2007.09.06
7	남부	고려검정고시원격학원	영등포구	2014.12.19
8	남부	국자감원격학원	영등포구	2013.05.30
9	북부	고시월검정고시학원	도봉구	2015.05.27
10	북부	서울국가검정고시학원	노원구	2015.05.29
11	중부	한양학원	중구	2003.08.14
12	중부	오름교육학원	종로구	2013.01.18
13	중부	온라인고시학원	종로구	2015.11.27
14	중부	고시고시검정고시원격학원	종로구	2015.06.03
15	강동송파	한양검정고시학원	송파구	2010.04.07
16	강서양천	검스타트원격학원	강서구	2017.01.24
17	강남서초	올검정고시원격학원	서초구	2015.06.19
18	강남서초	와이제이패스검정고시원격학원	강남구	2015.07.02
19	동작관악	에듀월원격학원	동작구	2013.01.29
20	성동광진	성동한양검정고시어학원	성동구	1999.12.01

○ 이처럼 검정고시학원의 개원이 입시학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시설기준 면적이 일반학원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보습·논술학원·특수교육 관련 학원의 경우 70㎡ 이상, 음악학원과 미술학원의 경우 80㎡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비해 검정고시 학원의 시설기준은 150㎡ 이상으로 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³⁾

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3] 학원의 시설기준 및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참고.

- 또한 이러한 시설기준은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보아도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광주, 대전광역시교육청만 서울시교육청과 동일한 기준인 150㎡ 이상을 적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45㎡~130㎡ 정도로 낮은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간 학원설립 기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검정고시 학원의 시설기준을 현재의 15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신규 학원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학원간 형평성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검정고시 준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평생교육과-20875, 2017.11. 14.).⁴⁾

【표2】 전국 시·도 검정고시 학원 면적기준

(2017. 12. 5.기준)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자치구	군지역	시 지역	읍·면지역		
면적(㎡)	150	150	130	100	80	60	150	150
시·도명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구지역	군지역			동 지역	읍·면지역		
면적(㎡)	120	60	60	60	90	70	90	60
시·도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지역	읍·면지역	시 지역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읍·면지역
면적(㎡)	45	60	45	90	60	60	90	60

4)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2017.11.14.) 참고.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403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